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문

(25.1.1.기준)

h·well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안내문 접속



QR코드 접속(내 손안의 장기요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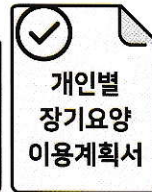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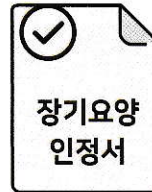
각종 급여이용정보를 모바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급여이용 안내 동영상, 급여비용 계산, 복지용구 급여제품 확인, 복지용구 이용 동영상, 장기요양기관 검색, 가족상담 안내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필수서류 수령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령



장기요양기관 찾기

지역, 기관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기관 선택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찾기
- The 건강보험(앱) > 장기요양 > 장기요양기관 찾기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제도소개



민원상담실



알림·자료실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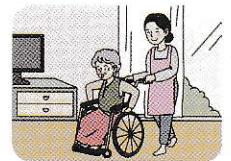
희망하는 기관과 상담 및 급여계약 → 계약서 2부 작성하여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각각 보관 → 계약서의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 내용 등 확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기관이 작성한 급여제공계획 내용 확인·동의 후 급여이용

* 희망하는 급여종류가 변경되거나, 계획서에 없는 경우 공단에 재작성발급 요청 필요



본인부담금 납부 (25.1.1. 기준) 본인부담률에 따른 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납부

구분	일반	40%감경	60%감경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복지용구 포함)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3등급 이하 등급의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로 구분되며, 서로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단,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 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 급여

방문요양



가정에서 식사 준비, 이동, 위생 관리, 병원 동행 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와 인지자극활동을 하고, 식사 준비·개인위생 등 일상생활훈련을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거나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전신목욕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욕창, 당뇨관리 등의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가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낮 동안(아침~저녁)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신체·사회 활동, 인지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식사·목욕 도움 등의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



보호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여행, 출장을 가는 동안, 단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일상생활·신체활동을 돕는 지팡이, 보행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배회감지기 등을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 1인당 연간 160만원(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 연한도액 초과 시 수급자 본인 부담

시설 급여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가정과 비슷한 주거 여건을 지닌 9인 이하의 공동생활가정과 그보다 규모가 큰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로 나뉘며, 입소하여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에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 매월 해당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 ('25.1.1. 기준)

월한도액 한 달 (매월 1일~말일)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

-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등급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월한도액 전액 이용 시)			
		15%(일반)	9%(40% 감경)	6%(60% 감경)	0%(기초)
1등급	2,306,400	345,960	207,570	138,380	면제
2등급	2,083,400	312,510	187,500	125,000	
3등급	1,485,700	222,850	133,710	89,140	
4등급	1,370,600	205,590	123,350	82,230	
5등급	1,177,000	176,550	105,930	70,620	
인지지원등급	657,400	98,610	59,160	39,440	